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391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12월 18일

제 안 자 : 교 통 위 원 장

1. 제안이유

- 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및 완성차업계 지원을 목적으로 비사업용 소형차(배기량 1,000cc 이상 1,600cc 미만)에 대해 도시철도공채 의무매입을 3년간('23.3.1. ~ '25.12.31.)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.
- 의무매입 면제규정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나, 계속되는 경기 둔화로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임.
- 또한, 현재 비사업용 소형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이 의무인 부산과 대구에서도 의무매입 면제제도를 운영 중인 상황으로, 서울에서도 형평성을 유지를 위해 의무매입 면제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.
- 이에 따라 한시 면제규정을 3년간 더 연장하여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기진작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비사업용 소형차 도시철도공채 의무매입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(안 제3조 제1항 제4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철도법
- 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1항 4호 중 “2025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28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도시철도공채 매입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) ①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철도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상 및 금액의 상한액으로 한다. 1. ~ 3. (생략) 4.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소형(배기량 1,000cc 이상 1,600cc 미만인 것) 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<u>2025</u> 년 <u>12월 31일까지</u> 그 매입의무를 면제한다.	제3조(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8</u> <u>년 12월 31일까지</u> ----- -----.